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둔지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영양사 배치 등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58호)

<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0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 등	5
2. 주둔지 지역 농축수산물을 군급식 식재료로 우선 납품	10
3. 각군 부대 영양사 배치 등	13
4. 친환경농수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 노력	16

I. 제안경위

1. 강대식의원안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9.
3. 회 부 일 : 2026. 2. 10.

2. 송옥주의원안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10.
3.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대식의원안

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2. 송옥주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Ⅲ. 검토의견

1.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 등

□ 개정안은 ①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② 군급식에 관한 계획, 군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예시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확히 함.

또한, 각 사단급 이상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¹⁾ 등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규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임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	② ----- -----제5조의 전군

1) 「군급식 기본법」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야 한다.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

(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계획

2. 군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군급식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등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
---	-----------------------------------

가. 전군 군급식위원회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시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예시하여 명확히 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2)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를 군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을 법

2) 「군급식 기본법 시행령」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률에서 명확히 하는 경우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각 사단급 이상 부대 군급식위원회

□ 개정안은 각 사단급 이상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등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규정함.

각 사단급 이상 부대 군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각군 부대의 장이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 심의·자문하는 역할임.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u>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u>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안 제5조에서 각 사단급 이상 부대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군급식에 관한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동시에 규정한 현행법 제10조와 법문 상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음.

현행법 제10조에서는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자문으로 동시에 규정하면서 필요적 절차로만 두고 있고 그 의결 내용의 구속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5조에서 부여한 역할과 현행법 제10조 간에 법문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각 사단급 이상 부대 군급식위원회의 역할을 개정안과 같이 심의로 할 것인지 현행법과 같이 심의·자문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개정안에 제시된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최근 제정(2026. 1. 20.)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상 ‘군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며, 군급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중요한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여 국방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제1항각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2. 주둔지 지역 농축수산물을 군급식 식재료로 우선 납품

-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군급식의 식재료로 납품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식재료) ① · ② (생략)	제7조(식재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u>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 ----- ----- ----- ----- <u>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에 따르면 접경지역 및 주둔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 및 군부대와 지역 사회 간의 상생을 도모함은 물론 단거리 운송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군장병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방부는 2021년 수립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³⁾ 상의 ‘다양한 조달원에 의한 급식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음.

최근 3년 간의 군급식 식재료 조달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의 비율이 감소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 비율은 2023년의 24.8%에서 2025년 8월 기준으로 40.3%까지 급증하였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수공급자 계약⁴⁾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3) '21년 코로나 시기 군 부실급식 사태를 계기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합동위 권고안에 따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10.14.)를 통해 의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연도별, 공급체계별 군급식 식재료 조달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계	경쟁계약 (부대계약)		수의계약 (농·축·수협)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3년	12,881	4,048	31.4	5,633	43.8	3,200	24.8
'24년	12,021	2,880	24.0	4,773	39.7	4,368	36.3
'25년 8월	6,389	1,330	20.8	2,488	38.9	2,571	40.3

한편, 지역산 식재료의 한정성으로 인한 메뉴 구성의 제한, 지역산 식재료의 수급 불안정 시 대처 방안, 식재료 단가 상승 등은 개정안과 함께 살필 논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주둔지 지역 농축수산물을 군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장병의 건강권 보호 강화 및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 측면과 식재료 조달원의 다양성, 지역산 식재료 우선 조달 시 살펴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조달원에 의한 급식 추진’이라는 현재의 군급식 정책방향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각군 부대 영양사 배치 등

□ 개정안은 ①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면서 ② 영양관리기준 및 영양사를 둘 각군 부대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영양관리)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u>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u> 정한다.	제8조(영양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다.</u> ③ ----- <u>영양관리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각군 부대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u>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생략)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u>제8조제2항에</u>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u>제8조제3항</u> ----- -----

기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이에 따른 배치기준의 제정 등을 통해 군급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먼저,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에 관련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각군 부대 영양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현재 국방부는 군부대 특성에 따라 급식 관련 조직을 기능별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영양관리직렬 군무원은 식단 구성 위주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둘째 격오지나 전방부대의 채용에 대하여는, 현재 영양관리직렬 군무원의 채용조건 상 영양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 산업 기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격오지나 전방부대 등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 볼 수 있음.

따라서,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확대를 통한 군인의 건강권 보호

강화와 현행의 군 급식 운영체계, 추가 배치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인력 운영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군부대 내에서 소위 영양사라고 불리는 ‘영양관리직렬 군무원’은 급식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민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달리 식단 구성 위주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군내 인력 운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배치되는바 「군급식기본법」상 영양사 배치규정을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은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것을 규정하면서 영양사를 둘 각군 부대의 기준 및 현행법령상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영양관리기준 또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사를 둘 각군 부대의 기준 및 영양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의 전문성과 기술성의 정도,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의 정도, 현행법 제정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⁵⁾

5) 현행법 제정 당시 당초 제정안은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안심의 단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4.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 노력

- 개정안은 각군 부대 등의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 식재료”라 함)의 구매 노력 및 이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식재료의 군급식 사용 금지를 규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식재료) ① ~ ④ (생략)	제7조(식재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

수사항)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수사항) 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가.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

☐ 개정안은 각군 부대 등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 및 이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 제55조⁶⁾에서는 국가와 지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

자체의 친환경 식재료의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각군 부대 등의 장에게 친환경 식재료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존의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우선구매 제도에 더해 개정안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 군급식 식재료에 친환경 식재료가 확대된다면,

군급식의 품질 향상 및 이로 인한 군장병의 건강 증진, 대규모 소비처인 군급식 식재료 납품 확대에 의한 친환경 농수산업 활성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 식재료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 확대에 따른 군급식 비용 상승과 재원 마련 대책, 대량의 식재료를 일시에 공급하여야 하는 군급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망 구축, 거짓 표시된 식재료를 식별하는 검수시스템의 구축 등은 개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임.

국방부는 학교급식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조례⁷⁾를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군급식은 친환경, 무농약, 또는 유기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 기본급식비 예산(14,000원/인·일)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가 제한되고

군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확보가 수반되어 재정관련 부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 거짓 표시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금지

□ 개정안은 거짓 표시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의 이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적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현행법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6조에서는 수범자인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 대해 제11
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각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3년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⁸⁾

8) 「군급식기본법」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제16조(벌칙)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거짓 표시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⁹⁾

개정안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법인 「친환경농어업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다만, 현행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¹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¹¹⁾ 등의 해당법만으로

한다.

1.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의3. (생략)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 8. (생략)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생략)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6. 제30조제1항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7. ~ 15. (생략)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도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²⁾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 현행법과 해당법의 위반행위 벌칙 비교

금지사항(제11조제1항)	위반 벌칙(제16조)	해당법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항)	좌동 해당법에서는 병과 및 누범 가중 처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제3호)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	「축산법」 벌칙 규정 없음 「학교급식법」 벌칙과 동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	좌동

문 의 처
02)6788-5307